개인정보보호론

[3주차. 프라이버시원칙]

세부적인 프라이버시 개념 유형: 6가지 유형

-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 _ 일반법적인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은 인격"
- 접근제한(Limited access to the self)
 - _ 타인에 의한 원치 않는 접근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
- 기밀성(Secrecy)
 - 타인으로부터 특정 문제를 숨김(concealment)
- 개인정보통제(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인격(Personhood)
 - 자신의 개성(personality), 특성(individuality), 존엄성(dignity) 보호
- 친밀감(Intimacy)
 - 자신의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나 생활 측면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통제

성명대학교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 홀로 있을 권리 관점의 프라이버시
 - "공동체 삶의 명확한 필요성 제외, 정부법에 입각하여 선택한 개인 삶을 사는 것, 폭력, 침입이나 침해로부터의 자유 보장" (아베 포르타스)
 - "명백히 해로운 행위 밖의 영역"에 대한 자기 사무(affairs)를 스스로 계획할 권리를 포함" (월리엄 오 더글라스)
- 홀로 있을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 개인면책의 일반권리
 - 일반법은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타인들과 소통할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보호
 - _ 프라이버시법뿐만 아니라, 헌법, 불법행위, 제정법에 깊은 영향



3

접근제한(limited access to the self)

- 접근제한 관점의 프라이버시
 - "사생활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 ✓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 생각, 감정, 행위와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구성(E.L.고드킨)
 - "타인에 의한 원치 않는 접근, 물리적 접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심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condition)" (씨에라 복)
 - _ "자신만의 영역에 있어 타인에 대한 배타적 접근" (어니스트 반덴하그)
 - ✓ 개인에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A)보거나 (B)이용하거나 (C)범하는 것(침해, 침범)을 배척할 권리를 제공
- 접근제한의 개념화
 - 타인에 의한 원치 않는 접근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
 - _ 개인의 욕구를 개인의 은닉, 타인과 분리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

强 상명대학교

기밀성(secrecy)

- 기밀성 관점의 프라이버시
 - 타인으로부터 특정 문제 숨김(concealment), 특정문제 기밀성 관점
 ✓ 사전에 숨겨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
 - 프라이버시는 홀로 있을 것에 대한 것과 정보은닉 두 관점 포함하며 후자가 기밀성을 포함(리차드 포스너)
 - ✓ 홀로 있을 것: 원치 않는 전화방해, 시끄러운 소리, 거리 밀침당하지 않는 것
 - ✓ 정보은닉: 정보당사자의 바람과 달리 사적정보가 획득된 경우의 침해
 - "자신에 관한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숨길 수 있는 개인의 권리"정의
 - ✓ 유해한 자신에 관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자기본위의 경제적 행동의 한 형태
 - ✓ "타인에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활동과 계획에 관한 지식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인간욕구의 산물" (시드니 제라니)



5

개인정보통제(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통제 관점의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는 개인, 그룹 또는 기관에 대해 언제, 어떻게,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타인과 소통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 (알렌 웨스틴)
 -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권리의 기본속성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순환(circulation)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아서 밀러)
 -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타인으로 비롯한 자기정보의 부재를 의미하 는 않고, 자기정보에 대해 자신이 갖는 통제 의미" (찰리스 프라이드)
 - "프라이버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 공개, 사용되는 형태를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claim)" (빌 클린턴 IITF 정의)
 - _ "프라이버시는 자기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를 구성 대법원 진술



개인정보통제(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통제 관점의 개인정보 범위 모호
 - 대부분의 대인관계를 침해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정의
 - ✓ "누가 우리를 보고, 듣고, 접촉하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지 종합하여 우리를 인지하는 사람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핵심" (리차드 파커)
 - ✓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인관계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는 문제 발생
 - 개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비합리적인 개인정보 정의
 - ✓ 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개인식별정보가 존재하므로 비합리적 범위 제공
- 개인정보통제관점의 통제(control) 정의 부적절
 - 통제를 정보의 소유자 혹은 정보의 형태로만 이해
 - ✓ "자신의 개인인격(private personality)에 관한 결정권으로서의 개인정보는 소 유권(property right)으로 정의되어야 함" (웨스틴)



7

개인정보통제(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 재산권으로서의 개인정보
 - 인격(personality)의 확장으로 볼 때 정당함
 - ✓ 자기 삶의 저자로서 자기인격의 개발을 통해 정보를 생성
 - ✓ 타인에게 있어 자아는 자아의 자기표현 즉. 소유물은 표출된 것
 - 재산권 개념의 개인정보로의 확대 어려움
 - ✓ 정보이전의 용이성과 이전된 정보의 삭제어려움 등 개인정보의 복잡성 존재
 - ✓ 다른 상품과 개인정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즉, 개인정보는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모든 이해주체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
 - ✓ 예) 웹 검색 정보: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통해 생산, 개인이 유일한 창조자 아님



친밀감(intimacy)

- 친밀감 관점의 프라이버시
 - 자신의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나 생활 측면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개념
 - ✓ 친분은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나 정신으로의 접근에 대한 의식"
 - ✓ 프라이버시는 "행위자의 사랑, 관심, 호감으로부터 그 의미와 가치를 묘사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는 행위자의 상태"로 정의
 - 프라이버시를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필수요소'로 인식
 ✓ 친분은 합리적인 자치를 넘어 윤리적인 개성으로 확장(다니엘 퍼버)
 - 프라이버시를 제한된 접근과 통제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간관계의 발전'에 두는 개념
 - ✓ 프라이버시의 관계 지향적 가치에 초점을 둠(로버트 걸스타인)



9

프라이버시 침해

- 신체적 침해(Physical Injuries)
- 금전적 손실과 재산권 침해(Financial Losses and Property Harms)
 - 불완전은 Id도용/사기로, 침해는 소유권 침해, 타인재산 향유 방해
- 평판에 대한 침해(Reputational Harms)
 - 로마시대부터 명예훼손으로부터의 평판손실을 인식하고 구제
-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침해(Emotional and Psychological Harms)
 - 워렌&브랜다이즈 논문: 프라이버시침해의 정신적속성이 법구제로 현실화
- 관계적 침해(Relationship Harms)
 - 친밀한 관계 결속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자유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 내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성명대학교 SANGMYLING LINIVERSITY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2차적 침해 현상

- 취약성 침해(Vulnerability Harms)
 - 사람들을 미래에 손상시킬지 모르는 위험의 생성을 포함하는, 사람들을 보다 위험하고 덜 안전하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침해
 - _ 불안전문제: 정보처리의 문제는 "취약한 구조"의 결과 초래
- 냉각효과(Chilling Effects)
 - _ 또 다른 해악을 일으켜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참여 못하게 방해
 - 냉각효과는 사회를 침해하고, 특별히 개인의 가치 형태로 측정 안됨
- 권력 불균형(Power Imbalances)
 - 역설적으로 많은 프라이버시 문제들은 특정개인의 직접적 침해가 아닌,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주는 권력 불균형을 초래
 - 정부와 시민 사이의 구조적 권력균형 제공이 필요

성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11

프라이버시 인식의 변화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

개인의 생활영역 또는 개인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 생활 영역에 대한 한정된 정보로서의 인간 생활영역을 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Self-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

- ✓ 타인에 의한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는 개인정보의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처리방식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나
-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처리·조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

盤 상명대학교

개인정보자기결정권(Self-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에서 시작
 - "정보조사. 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유형을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의미
- 디지털화된 가상인격에 의해 실존인격이 규정됨으로써 실존인격에 가해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될 수 있는 정보환경, 나아가 분산된 개인정보들을 단일의 기록파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보환경에서 생겨남



1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익"(interest in avoiding disclosure of personal matters) +

 "자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interest in independence in making certain kinds of important decisions)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개인인격의 구성요소들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화 됨으로써 정보주체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권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Recommendation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1980년 제시되고 2013년 7월 11일 OECD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
- 목적 : 원활한 정보의 국제적 흐름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조화
- 내용: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유통관리 위한 회원국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 가이드라인 규정
 - 컴퓨터의 본격적 이용 이전, 회원국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공공/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컴퓨터에 의한 개인데이터 처리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프라이버시 8원칙 제시



15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형성 배경

- 프라이버시는 개별 국가별로 보호범위나 형태가 다른 가운데, 데이터 유통시 상호조정 필요
- 각국의 규제범위 차이
 - 스웨덴, 미국, 서독, 프랑스 : 1976년 법제정, 개인의 범위가 자연인에 한정
 -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 1976년 이후 제정, 법인정보 포함
- 프라이버시 보호규제 국가는 없는 국가를 근거지로 하여 규제회피
- ICT 기술의 진전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국가간 조정 필요성 증가
 - _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확대
 -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자국 정보처리산업 보호의 목적 등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 OECD 8원칙

구분	원칙	내용
1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수집하는 경우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
2 원칙	정보정확화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이 상태를 유지해야 함
3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수집하기 이전 또는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함



17

OECD 8원칙

구분	원칙	내용
4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로는 이용할 수 없음(단,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는 제외)
5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훼손,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
6 원칙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개인정보 관리자의 주소 등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공개방침이 있어야 함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OECD 8원칙

구분	원칙	내용
7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짐
8 원칙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생 상명대학교

19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PDF 27.p)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Google은 Google 서비스 사용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의 신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인지하며 최선을 다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OECD 8원칙에 기반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 1. 수집제한의 원칙
 - 사용자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기기 정보, 검색하는 단어, 시청하는 동영상, 광고, 중요한 사람, 콘텐츠를 교류하는 사람 등과 같은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 Google 계정 가입할 때에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하며 기기정보, 로그정보, 위치정보 등 포괄적 정보수집과 저장을 제시하고 있음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22

■ 2. 정보정확화의 원칙

- _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사용자 활동을 google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 활동과 연결하며 광고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고 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수집의 우려가 있음



23

■ 3. 목적명확화의 원칙

 수집목적이 광범위하여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 이용인지 파악하기 모호하고 어려움(특히, 새 서비스 개발과 광고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



■ 4. 이용제한의 원칙

- 외부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제시되어 있는 계열사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제공목적 등을 명확히 밝히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하지만, 명확한 업체 리스트 및 목적 제시없이 전세계 2백만 개가 넙는 웹사이트와 앱과 광고 게재를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고만 제시함



25

■ 5. 안전확보의 원칙

"정보보호를 위해 서비스에 보안을 구축합니다"를 통해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를 안내하고 있음



■ 6. 공개의 원칙

 "Privacy Policy"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으며 "변경" 항목을 통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변경 고지 이메일 발송을 안내하고 있음



27

■ 7. 개인 참여의 원칙

- "사용자 정보 관리, 검토, 업데이트"정보 내보내기, 제거, 삭제"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및 개인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Do Nor Track" "개인정보 보호 진단"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 설정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본 설정이 프라이버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글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역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특히 '수집하는 정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 확인 불가)
- "기타 유용한 자료 " 로 표시되는 정보는 개인에게 유용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자료의 수집 및 저장에 대해 정보 주체의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쿠키 및 유사기술 등)



- 8.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Privacy Policy"에 제시하고 있지 않음 (별도 항목을 만들어 대리인으로 제시함)

